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
2025. 4. 10(목) 10:00

제25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

(교통건설국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추병수

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682호
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다. 제출일자 : 2025. 3. 28.
라. 회부일자 : 2025. 3. 28.

2. 제안이유

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「지방자치법」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(총괄)

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(안)

- 최종예산 776,986,391천원(일반 8,070,788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	분	예산액 (A+B)	기정액			1회추경 (안) (B)	비고
			소계 (A)	당초예산	간주처리		
계		776,986,391	768,915,603	764,927,053	3,988,550	8,070,788	
일 반 회 계		754,545,611	746,474,823	743,148,273	3,326,550	8,070,788	
특 별 회 계		22,440,780	22,440,780	21,778,780	662,000	-	
	의료급여기금	634,164	634,164	634,164	-	-	
	주 차 장	21,806,616	21,806,616	21,144,616	662,000	-	

4. 교통건설국 추경예산안

(단위:천 원)

구	분	추경예산	기정예산	1회추경(안)	증감율 (%)
교 통 건 설 국		50,608,703	50,185,537	423,166	0.84 %
교 통 행 정 과		3,344,212	2,921,046	423,166	14.49 %
주 차 관 리 과		23,906,800	23,906,800	0	0.00 %
건 설 행 정 과		4,848,513	4,848,513	0	0.00 %
도 로 과		8,795,514	8,795,514	0	0.00 %
치 수 과		9,713,664	9,713,664	0	0.00 %

5. 부서별 주요 추경예산안

○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

(단위:천 원)

세 부 사 업 명	주 요 내 용	최종예산 (①+②)	기정액 (①)	제1회추경(안) ②
교통행정과				
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교육	마을버스 운전업무 취업희망자 23명 교육비 지급(기관연계)	30,000	0	30,000
마을버스 운수종사 자 처우 개선비	마을버스 운수종사자 160명 처우개선비 매월 30만원(8개월)	384,000	0	384,000
교통안전지도사업	확정내시 증액에 따른 매칭액 (교통안전지도사 인건비)증액	55,172	46,006	9,166

○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

(단위:천 원)

연번	부 서 명	사 업 명	주 요 내 용	최종예산	기정액	1회 추경(안)
계				100,000	100,000	0
1	주 차 관 리 과	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자동처리시스템 운영	불법 주정차 안전신문고 민원에 대한 단속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처리	16,500	0	16,500
2	“	추경편성을 위한 감액(예비비)		83,500	100,000	-16,500

6. 검토의견

○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

- 기정액(501억 8,553만원)에서 금회 4억 2,316만원이 증액되어, 506억 87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6.51%에 해당됨.

○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,

가. 교통행정과

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교육 3,000만원 증액

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3억 8,400만원 증액

교통안전지도사업 916만원 증액

나.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은

불법주정차 신고처리시스템 1,650만원 증액

○ 교통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마을버스 불편사항 해소 등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를 근거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됨.

관계법령

『지방자치법』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951호, 2024. 1. 9., 타법개정]

제145조(추가경정예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

『지방재정법』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591호, 2023. 8. 8., 타법개정]

제45조 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 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
- [전문개정 2011.8.4.]